

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 3520호

2019. 5. 16.(목)

함께
서울



서울특별시

| | |
|--|-----|
| 제7182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46 |
| 제7183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| 148 |
| 제7184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52 |
| 제718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53 |
| 제7186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54 |
| 제7187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56 |
| 제7188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57 |
| 제7189호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59 |
| 제719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60 |
| 제7191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62 |
| 제7192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63 |
| 제719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| 163 |
| 제7194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67 |
| 제7195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69 |
| 제7196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70 |
| 제7197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| 171 |
| 제719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74 |
| 제7199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75 |
| <u>제720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</u> | 175 |
| 제7201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80 |
| 제7202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80 |
| 제720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81 |
| 제7204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82 |
| 제7205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84 |
| 제7206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85 |
| 제7207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| 185 |
| [입법예고] | |
| 제2019-134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188 |
| 제2019-1398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189 |
| 제2019-140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 189 |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주거지 사이의 거리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청사의 점·소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조명계획 수립시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토록 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·관리 목적을 정비하여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편, 조례에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청사의 점등·소등시간 고려사항에 주거지 사이의 거리, 지역특성을 추가함(제24조 제2항)
- 나. 조명계획 수립시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함(제22조의2 신설)
- 다. 상업·공업지역에 지정되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에 공업활동을 추가함(제6조제1항제4호)
- 라.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함(제2조제2호,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)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7200호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5월 16일
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☎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시 심의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(이하 “시 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) ① 영 제3조의2, 제4조제1항제12호 다목 및 제20조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(이하 “홀로그램”이라 한다) 또는 전자빔은 영 또는 이 조례에서

정하는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1. 도로·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. 다만,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.
2.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면·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.
3.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난간,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3층”을 “5층”으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4층 이상에는 입체형(문자·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,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·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1 이내, 세로크기는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2미터 이내,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,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하여 아랫부분은 4층 이상이어야 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 중 “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”을 “간판이 「건축법」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(개폐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중 “이하로”를 “이내로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말한다”를 “말하며, 터치스크린 또는 전체화면 면적의 4분의1 이내의 화면·문자 변환은 정지화면으로 본다”로 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(이하 “시 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시 심의 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벽면에는”을 “벽면에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16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·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모바일로”를 “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하는 모바일·전자적방식 등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(제26조제2항 관련)



[예시]

비고
(예시)

1. 표시규격 : 가로 5cm × 세로 5cm
2. 표시내용 : '2019'는 허가·신고 연도 표시,
'10001 또는 20001'은 일련번호(허가1, 신고2) 표시

제26조제3항 중 “아래부분으로부터 160센티미터 높이의 오른쪽으로 한다”를 “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계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들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·신고 또는 협의·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- ②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허가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분부터 적용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법령 및 조례상 정하지 않은 “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”을 이용한 개별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고, 건물벽면을 이용한 간판설치 허용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등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과 광고물 실명제 표시대상 및 방법에 자사광고와 전자적방식 등을 추가하는 등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마련함(제3조의2 신설)
- 나. 벽면이용간판의 허용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함(제4조제1항제1호)
- 다. 벽면이용간판 등의 표시방법을 보완함(제4조제1항제3호, 제4조제1항제7호, 제4조 제3항제2호, 제11조제2항제1호)
- 라. 광고물 실명제 대상에 자사광고를 추가함(제26조제1항)
- 마. 광고물 실명제 표시 및 인식방법을 개선·보완함(제26조제2항 및 제3항)
- 바. 광고물 실명제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도록 함(제26조제4항 신설)
- 사. 광고물 실명제 서식을 추가함(별지 제2호 서식 신설)